

定 款

(2013년 3월 22일 현재)



제1장 총 칙

제1조(상호) 이 회사는 대상주식회사라 칭한다. 영문으로는 DAESANG CORPORATION (약호 DAESANG CORP.)라 표기한다.

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
2. 고기, 수산물, 과일, 채소, 가공 및 저장처리업
3. 동·식물성 유지 제조업
4.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
5. 곡물 가공품 제조업
6. 전분 및 당류 제조업
7. 사료 제조업
8.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업
9. 설탕제조,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
10. 국수,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
11. 커피, 차류, 수프 및 균질화식품, 두부 및 유사식품,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등 기타 식료품 제조업
12. 주정, 증류주 및 합성주, 발효주 및 탁주, 맥아 및 맥주 제조업,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
13. 비알콜성 음료, 얼음 및 먹는샘물 제조업
14. 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, 조경수식재 및 농업·축산업관련 서비스업
15. 인공씨감자 등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, 채소,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
16. 과일,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등 재배업 및 시설작물재배업
17. 관광농원 및 부대서비스 운영업
18. 영림업 및 임업관련 서비스업
19. 어로 어업, 양식 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
20. 가죽 제조업
21. 기초 유기·무기화합물 제조업
22. 무기안료, 염료,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
23.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

24.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
25. 의약품, 기타 화학제품, 의료용기기 제조업
26. 도료,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
27. 비누,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
28. 기록용 매체 및 관련화학제품 제조업
29. 접착제 및 젤라틴 등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
30. 화학섬유 제조업
31. 제1차, 건축용, 포장용, 기계장비 조립용 및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32.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
33. 일반도자기 및 내화요업제품 제조업
34. 자동차부품 제조업
35. 지반조성 공사업
36. 토목시설물, 주거·비주거용 건물 건설업
37.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 공사업
38. 건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
39.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
40. 전기 및 통신 공사업
41. 도장, 도배 및 내장, 유리 및 창호,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
42. 건설장비 운영업
43.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및 관련 서비스업
44. 석회석 및 점토광업, 석재,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
45. 자동차 수리업
46. 상품중개업, 음·식료품 및 담배, 가정용품, 건축자재 및 철물, 기계장비 및 관련
용품, 기타 등 일반도매업
47.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, 가전제품, 가구 및 가정용품 등 소매업, 종합소매업,
음·식료품 및 담배 등 기타 일반소매업
48.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
49. 숙박업 및 음식점업
50. 소포 송달업 및 도로화물 운송업
51. 화물취급업 및 창고업
52. 육상,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 등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
53. 부동산 임대, 공급, 관리 중개 및 감정업

54. 자연과학,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
55.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,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, 전문 디자인, 광고업 등
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56. 의료업 및 사회복지사업, 교육 서비스업
57.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
58. 경기장, 골프장 및 스키장,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
59. 미용,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그 외 기타 서비스업
60. 생명공학 관련사업
61.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
62. 벤처 관련사업
63. 포장 및 충전업
64. 첨단 아이디어 개발사업
65. 곡물 등 대량생산기술 및 식품조직배양 플랜트 수출입업 및 판매업
66. 화력발전업, 기타 발전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사업
67. 바이오가스 제조 및 공급업
68. 증기, 냉운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
69. 지정외 폐기물의 수집, 운반, 처리 및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연료 제조업
70. 폐수처리,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
71. 환경관리시설 운영업
72. 전 각항의 관련사업에 대한 일체의 부대사업

제3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)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.

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,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

제4조(공고방법)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다만,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제2장 주 식

제5조(발행할 주식의 총수)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이천오백만주로 한다.

제6조(일주의 금액)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.